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국  
내  
한  
민  
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

1. 건설산업과-6898('21.8.11.)의 관련입니다.
2.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 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이와 별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라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관리주체가 같은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연면적 또는 세대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5. 이에 각 부처 및 시·도 등에서는 소속, 산하기관 및 시·군·구를 통해 관리주체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실시 기준 해석 시의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부동산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국토안전관리원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장, 주택관리공단(주) 사장, 항공안전기술원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새만금개발공사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주무관 이상민 공업사무관 이광우 건설산업과장 전결 09/16  
김광림

#### 협조자

시행 건설산업과-7991 ( 2021. 9. 16. ) 접수 건축기획과-4045 ( 2021. 9. 17.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 <http://www.molit.go.kr>  
6동 341호 전화 044-201-3540 / 전송 044-201-5547 / [windcoolv@molit.go.kr](mailto:windcoolv@molit.go.kr) / 대시민공개